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401
------	------

2016. 9. 1.
기획경제위원회

I.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출자 : 2016년 8월 30일, 김진철 의원 외 26명

나. 회부일자 : 2016년 9월 1일

다. 상정결과 :

【서울특별시의회 제270회 임시회】

-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2016.9.1.) 상정, 제안설명, 검토 보고, 질의 및 답변, 의결(수정안 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김진철 의원)

- 본 개정안은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 등으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

고 있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와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통시장 신시장 모델 사업을 통한 성과를 확산하고, 지역상권의 특성에 맞는 컨설팅 제공,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인력 양성 및 교육, 주민과의 협력 등의 전문적인 지원이 필요한 바, 이를 수행할 전담조직으로 지역상권 활력센터를 설치·운영하고자 함.

Ⅲ.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윤병국)

가. 개정안의 개요

- 본 개정안은 지역상권 활력센터를 설치·운영하여 기존의 전통시장 관련 사업의 성과를 확산하고 지역상권의 특성에 따른 지원과 교육의 실시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와 함께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

나. 서울시의 전통시장 등에 대한 지원 현황과 문제점

- 1996년 유통시장이 개방된 이후에 대기업의 시장진출 등으로 전통시장의 침체가 가속화되었고 전통시장 등에 대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다양한 방면으로 실시되었음.

<서울시의 전통시장 현황>(16년 7월말 기준)

구 분	시 장 수	점 포 수	상 인 수	상인회 등록수(개)	비 고
계	352	61,477	133,922	200(56.8%)	
등 록	148	31,303	57,137	47(31.8%)	
인 정	108	16,246	37,880	104(96.3%)	
상점가	49	10,319	33,545	48(98.0%)	
무등록	47	3,609	5,360	1(2.1%)	관악구 삼성동시장

-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은 크게 시설개선을 위한 시설현대화 사업과 경영활성화를 위한 경영현대화 사업으로 구분되고 있음. 시설현대화사업은 아케이드 설치 및 보수, 주차장 조성, 화장실 설치 및 개선, 전기·소방, 건물보수 및 진입로 정비, 특화거리 조성, 상징조형물 설치 등으로 추진되고 있음.

<시설현대화 사업 추진 실적>

(단위 : 개소, 억원)

구 분	계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사업수	339	13	35	19	26	6	7	20	19	31	23	22	29	30	59
사업비 (시비)	2743 (702)	141 (51)	308 (118)	248 (96)	184 (80)	82 (11)	207 (45)	282 (40)	304 (62)	232 (43)	155 (28)	155 (32)	162 (32)	167 (34)	116 (30)

- 전통시장의 경영현대화 사업은 공동사업 및 활성화, 고객 유치를 위한 마케팅 활동, 전통시장 혁신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등의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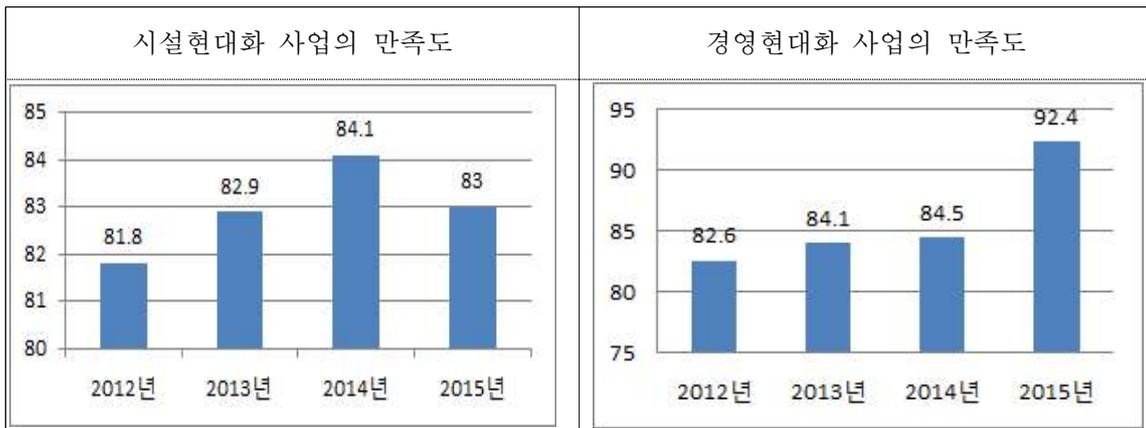
<전통시장 경영현대화 지원 주요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합계	2012	2013	2014	2015	2016
문화와 예술이 함께하는 전통시장 조성	7,304	365	680	974	3,676	1,609
전통시장 상인역량강화 및 조직활성화 지원	4,030	463	664	1,421	796	686
전통시장 공동배송서비스 운영	2,113	170	898	226	189	630
전통시장 다시살림 프로젝트 신시장 모델 육성	11,410		-	2,100	5,110	4,200
전통시장 이벤트 및 전통시장 박람회 (전통시장 가는 날 사업지원)	8,191	1,641	1,500	1,500	2,050	1,500
전통시장 공동상품권 발행 및 운영지원	349	250	99			
전통시장 경영현대화 사업 지원	2,310	2,310				
합 계	35,707	5,199	3,841	6,221	11,821	8,625

-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예산 지원의 대부분이 시설현대화 사업에 투입되지만 만족도 결과는 경영현대화 사업이 더욱 높은 편임.

<상인 대상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만족도 조사 결과>



※ 조사개요

조사지역 :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및 경영현대화 추진 시장

조사대상 : 2015년 상인 1,420명, 2014년 1,320명, 2013년 1,460명

조사내용 :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만족도 및 기타시장 활성화 관련 의견

- 시설현대화 사업은 대형마트와 비교할 때 전통시장의 취약점이 시설 편의성이라는 인식에 중점을 둔 것이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

는 천편일률적인 지원으로 전통시장 별로 고유한 정체성과 특성을 저해하여 경쟁력 확보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음.

- 지속적인 시설현대화 사업에도 불구하고 대형마트와 비교하면 여전히 전통시장은 주차장 등의 고객 편의시설이 부족한 상황이며 많은 자본을 투입하여도 대형마트가 가진 수준의 편의성을 확보하는 것이 어려움.
- 경영현대화 사업은 시설현대화 사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높지만 서울시의 전통시장 대부분이 대형마트의 영업반경 내에 있어 전통시장의 특성에 따른 맞춤형 지원 등으로 전통시장만의 차별화된 경쟁력 확보 방안이 요구됨.

다. 지역상권 활력센터의 목적과 기능

- 본 개정안에 따르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와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지역상권 활력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각 호에서 센터의 기능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 개정안 각 호에 규정된 지역상권 활력센터의 기능들은 현재 서울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전통시장 지원 사업들과 신규 사업들을 포함하고 있음.
 - 센터의 기능 중 제1호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에 현재 추진 중인 전통시장 경영현대화 사업을 모두 포괄하고 있어 취지는 바람직함.

안 제11조(지역상권 활력센터의 설치·운영)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
2. 전통시장 신시장 모델 확산 전파

3. 지역상권에 맞는 맞춤형 진단 컨설팅
4. 청년상인 등 새로운 상인주체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업
5. 상인 역량 강화 및 교육
6.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상인과 주민 간의 협력 및 연계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한편, 현재 전통시장 지원사업의 대부분이 상인회가 조직된 시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바, 본 개정안은 센터의 일부 기능이 지원 대상의 범위를 지역상권으로 확대하여 설정하고 있어 기존의 전통시장 지원 사업을 통한 성과를 주변으로 확산·확대하는 기능을 하고 있음.
- 특히 ‘새로운 상인주체의 육성과 지원’ 및 ‘상인 역량 강화 및 교육’을 통하여 침체되고 있는 전통시장 등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상인과 주민 간의 협력 및 연계 사업’으로 지역상권과 지역공동체 간의 상생에 대한 공감대를 조성하여 지역상권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종합의견

- 지금까지 전통시장 등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다양한 지원이 있었고 이를 통하여 전통시장 등의 매출이 늘어나는 등 일부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음.
-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의 성과평가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시설현대화 사업을 실시한 시장은 매출액이 10%씩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으나 시설현대화를 참여하지 않은 시장은 매출액이 감소하고 있음.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전후 매출액 변동 조사표>

(단위 : 1일 매출액/원, %)

구분 ¹⁾	2012년 매출변동조사			2013년 매출변동조사			2014년 매출변동조사		
	2011년	2012년	증감률	2012년	2013년	증감률	2013년	2014년	증감률
시설현대화 사업 실시 시장 ²⁾	286,372	319,864	11.7	316,433	356,233	12.6	375,442	412,380	9.84
미실시 시장 ³⁾	200,370	166,817	△16.7	171,383	149,233	△12.9	222,700	197,800	△11.2

주 : 1) 매출변동조사는 점포실태를 표본조사로 실시함에 따라 전년도 매출액이 다음해 매출액과 동일하지 않음

2) 국비·시비 지원을 받아 시설현대화 사업만 실시한 시장

3) 시설 및 경영현대화 사업 모두 실시되지 않은 시장

자료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통시장활성화 지원사업 성과평가 결과보고서(2014)

- 하지만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획일화된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전통시장 등의 경쟁력 확보는 한계가 있어 전통시장 별로 특화된 콘텐츠를 통한 대형마트와의 차별화된 전략이 요구되고 있음.

- 이런 상황을 감안하면 지역상권 활력센터가 설치·운영된다면 전통시장과 상점가를 비롯한 지역상권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과 새로운 상인주체의 육성 등을 통하여 지역상권의 실질적인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다만 본 개정안에 따르면 센터의 일부 기능이 전통시장과 상점가보다 확장된 지역상권을 지원 범위로 규정하고 있어 한정된 수행 인력과 재원을 고려하여 사업계획 수립 시에 지원범위와 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검토가 요구됨.

- ※ 서울시는 내년에 센터의 설치를 위하여 예산을 편성할 예정이며 추진 중인 연구용역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력센터의 기능과 조직 등 세부적인 사항들을 검토하고 있음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수정안의 요지

가. 수정이유

- 지역상권 활력센터의 조직, 구성, 운영 등에 대한 면밀한 사전계획 수립 후에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직영 또는 민간위탁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

나. 수정안의 주요 내용

- 센터에 대한 직접 운영 또는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안 제 11조 제3항)

VI. 심사결과 : 수정안 가결

(재적위원 11명, 참석위원 8명, 전원찬성)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1401
----------	---------

제안년월일 : 2016년 9월 1일
제안자 : 기획경제위원장

1. 수정이유

- 지역상권 활력센터의 조직, 구성, 운영 등에 대한 면밀한 사전계획 수립 후에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직영 또는 민간위탁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

2. 수정의 주요 내용

- 센터에 대한 직접 운영 또는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안 제 11조 제3항)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1조 제3항을 삭제한다.

수정안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정안
<p><신설></p>	<p>제11조(지역상권 활력센터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와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상권 활력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p> <p>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 2. 전통시장 신시장 모델 확산 전파 3. 지역상권에 맞는 맞춤형 진단 컨설팅 4. 청년상인 등 새로운 상인주체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업 5. 상인 역량 강화 및 교육 6.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상인과 주민 간의 협력 및 연계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③ 시장은 센터를 직접 운</p>	<p>제11조(지역상권 활력센터의 설치·운영) ① ~ ② (개정안과 같음)</p> <p><삭제></p>

<p><u>제11조~제13조</u>(생략)</p>	<p><u>영하거나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 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u></p> <p><u>제12조~제14조</u>(현행과 동일)</p>	<p><u>제12조~제14조</u>(개정안과 동일)</p>
-----------------------------	--	----------------------------------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부터 제13조를 제12조부터 제14조로 하고 아래와 같이 제11조를 신설한다.

제11조(지역상권 활력센터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와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상권 활력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
2. 전통시장 신시장 모델 확산 전파
3. 지역상권에 맞는 맞춤형 진단 컨설팅
4. 청년상인 등 새로운 상인주체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업
5. 상인 역량 강화 및 교육
6.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상인과 주민 간의 협력 및 연계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1조~제13조(생략)</p>	<p>〈신설〉 제11조(지역상권 활력센터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와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상권 활력센터(이하 “센터” 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p> <p>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 2. 전통시장 신시장 모델 확산 전파 3. 지역상권에 맞는 맞춤형 진단 컨설팅 4. 청년상인 등 새로운 상인주체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업 5. 상인 역량 강화 및 교육 6.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상인과 주민 간의 협력 및 연계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제12조~제14조(현행과 동일)</p>